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
목차

이수증

교육목적

교육의무 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교육내용 및 시간

▼ 이수증

【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】이수 증명서

본 교육 이수 증명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 【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】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며, 이수증(카드)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

본 종은 [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] 에 의한 [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]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교육 이수중 입니다.
 주의 사 항

1. 본 종은 타인에게 대여 할 수 없습니다.
2. 본 종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교육실시기관 또는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벌급 받을 수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·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이수증명서 출력일자 : 2022. 08. 24



※ QR코드로 건설업기초교육 이수내역 조회가 가능하며, 조회시 결과페이지 서버주소 http://k2b.kosha.or.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https://s3-us-west-2.amazonaws.com/secure.notion-static.com/d1d61af2-dc78-4d2d-867f-23e1fd2cdfcb/20220824141153781.pdf

교육목적

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 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교육의무 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-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및 시간

구분	교육내용	시간
공통	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	1시간
	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	
교육대상별	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	2시간
	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	1시간

대한창조안전교육원



건설업 기초안전보관

교육시간

교육일자: 매일 2회 교육

교육시간: 4시간 교육

평일 오전 08:30~12:30

모후 13:00~17:00

토묘일 오전 09:00 ~ 13:00

오후 13:30~17:30

무료교육 대상자

○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

- 1.만55세 이상
- 2.민20세이하
- 3.장애인근로자
- 4.기초생활수급대상자
- 5.장기실업자(3개월이상)
- * 반드시 증빙 서류 지참(신분증, 관련서류 등)
- * 지원제외 대상 : 외국인, 이미 교육 받은 분

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 부산시 동구 범일로102번길 14, 8층 ㈜대한창조안전교육원 T.051.635.7800